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12. 선고 2015고단 1322 판결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132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24. 09:07경부터 같은 날 10:23경 사이 사천시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예전에 채팅할 때 보내주었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고, "내려주 세요 해봐 암캐년아", "모르겠어 이년

아..? 넌 내 노예나 다름없어 이제.." "내 섹스 장 난감이야.., "이렇게 찍구와", "속살이 보여야 한다구우 ~", "촉촉하게 젖었넹..능 소 감은~?"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장
- 1. 스마트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3,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현마 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판사 조은래